제재내용 공시

1. **조합명** : 강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2. 10. 13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감봉 및 변상 : 2명, 견책 및 변상 : 2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선박담보대출 사후관리 및 취급 부적정

- 1급 박○○ 외 3명은 차주 심○○에게 취급한 제5○○호 담보대출 유선승인 후 제3○○호 담보대출 회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, 제5○○호의 담보여력 범위 내 추가 취급한 대출금도 제3○○호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3급 김○○이 민원인 김○○에게 약속한 채무상환을 이유로 민원인 김○○에게 최종 지급되었으며,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시 어업허가 권이 없는 제3○○호는 유찰반복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취소되어 조합에 261백 만원의 손실이 발생함

〈 관련법규 〉

- 1. 「수산업법」 제41조(허가어업)
- 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3조(여신운용의 원칙), 제4편 제49조(관리원칙)
- 3. 「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」 제1편 제148조(필수점검자료), 제150조(창구책임자 준수사항)